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,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,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소방공무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20411호, 2024. 3. 26. 공포, 8. 14. 시행)됨에 따라,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재난현장 출장 또는 파견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 재난·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재난·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 도입(안 제 30조의4)

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·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

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나.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 방법 신설(안 제30조의6)
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이
5년을 초과하여 휴직하는 경우, 그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「공무
원임용령」 제57조의7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·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”을 “출산휴가, 유산휴가, 사산휴가, 육아휴직, 공무상질병휴직, 출장 또는 파견”으로 한다.

5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

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6(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) 법 제24조의2 후단에 따른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7을 준용한다.
이 경우 제57조의7 중 “3년”은 “5년”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0조의4(출산휴가자 또는 육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)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소속된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소방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,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	제30조의4(출산휴가자 또는 육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5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병가,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·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----- 출산휴가, 유산휴가, 사산휴가, 육아휴직, 공무상질병휴직, 출장 또는 파견 -----

-----.

제30조의6(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) 법 제24조의2 후단에 따른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7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57조의7 중 “3년”은 “5년”으로 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운영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044